

03 도시관리계획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2 용도지역 계획

3 용도지구 계획

4 도시계획시설 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
-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 시키는 중기계획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 으로 표현하는 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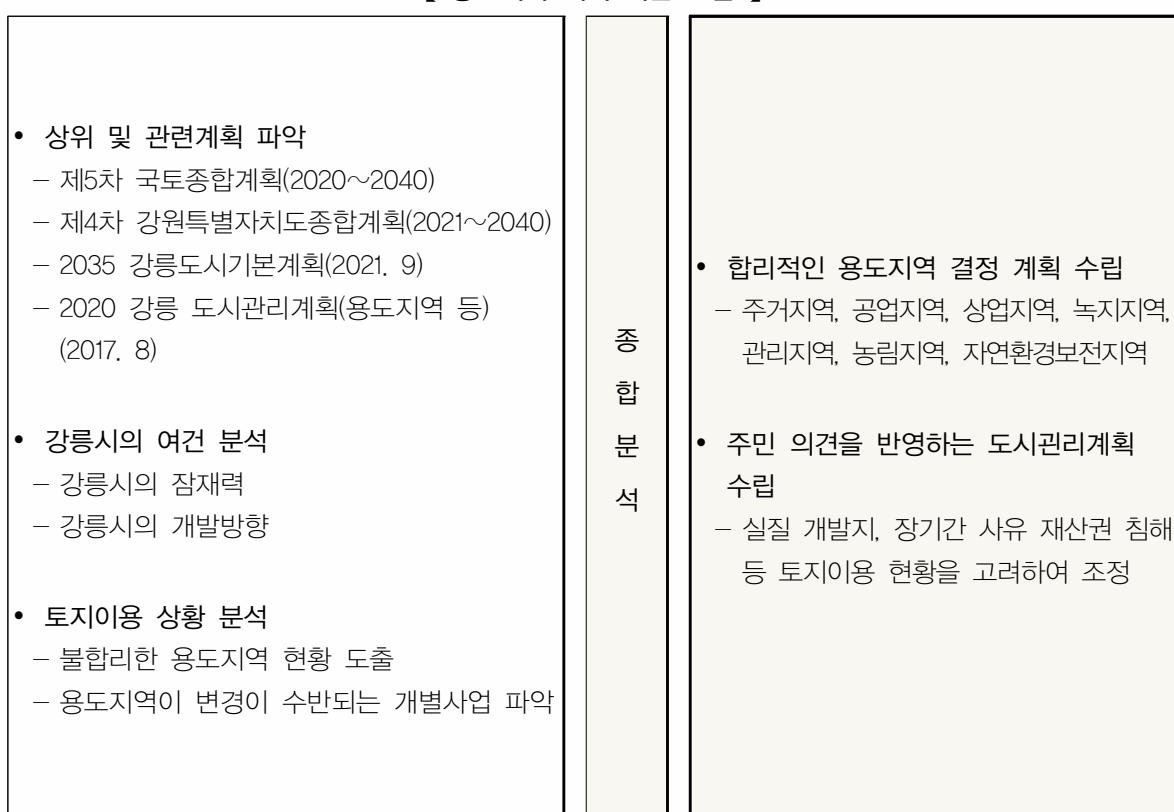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
-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분석 및 설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내용 등을 제시
-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을 계획·관리함으로 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
-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게 개발이 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 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2 용도지역 계획

1. 기본방향

- 「2035 강릉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근간으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 지역 결정
- 「2035 강릉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도래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의 잔여물량에 대한 지정여부 검토
- 「2035 강릉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를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 적정규모의 시가지개발 및 단계별 개발로 자원절약형 용도지역계획 수립
- 목표연도 도시발전 추세와 성장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 수립
-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수용에 적합한 정주환경 조성 및 개발공간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계획 수립
- 실제 개발사업 등 개발수요가 가시화 되었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준 설정
- 용도지역 수요추정에 의한 대상지 중 실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본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 지역 변경 시행

【 용도지역 계획 기본 흐름 】



2. 용도지역의 개념

- 도시관리계획 구역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자원의 인문·자연적 조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정한 토지이용의 구분
 - 용도지역은 협의의 토지이용만을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 용도지역 분류원칙은 이질적인 시설의 혼입 정도로서, 당해 지역 안에 이질적 시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따라 용도지역이 구분됨
-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
-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 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
 - 수해 등 재해빈발지역은 가급적 개발 용도의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상류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재해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

3.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

【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 】

구 분		지 정 목 적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제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	제1종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계속)

구 분		지정 목적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보완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개발 가능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주변의 용도지역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주변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4. 용도지역 결정현황

- 2023년 강릉시 도시관리지역은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1,046.881km²이며, 도시지역 85.019km², 관리 지역 203.441km², 농림지역 636.648km²,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3km²로 결정되어 있음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 기준)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결정현황은 녹지지역이 53.850km²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거지역 17.204km², 공업지역 5.588km², 상업지역 1.812km², 미지정 6.566km² 차지하고 있음
- 도시지역 내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지역)는 24.604km²로서 전체 용도지역의 2.35%를 차지함

【 도시관리지역 용도지역 결정현황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1,046,881,326	100.00	—
도시지역	소 계	85,019,346	8.12	—
	소 계	17,203,830	1.64	—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1,008	0.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33,959	0.9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0.15	—
	준주거지역	1,324,869	0.13	—
상업지역	소 계	1,812,138	0.17	—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1,630,318	0.15	—
	근린상업지역	181,820	0.02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지역	소 계	5,587,537	0.53	—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4,331,414	0.41	—
	준공업지역	1,256,123	0.12	—
녹지지역	소 계	53,850,183	5.15	—
	보전녹지지역	15,371,513	1.47	—
	생산녹지지역	4,078,179	0.39	—
	자연녹지지역	34,400,491	3.29	—
미지정		6,565,658	0.63	—
비도시지역	소 계	961,861,980	91.88	—
	관리지역	소 계	203,441,229	19.44
		보전관리지역	36,099,468	3.45
		생산관리지역	25,581,108	2.45
		계획관리지역	141,760,653	13.54
	농림지역	636,647,867	60.81	—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2,884	11.63	—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기준

5.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계획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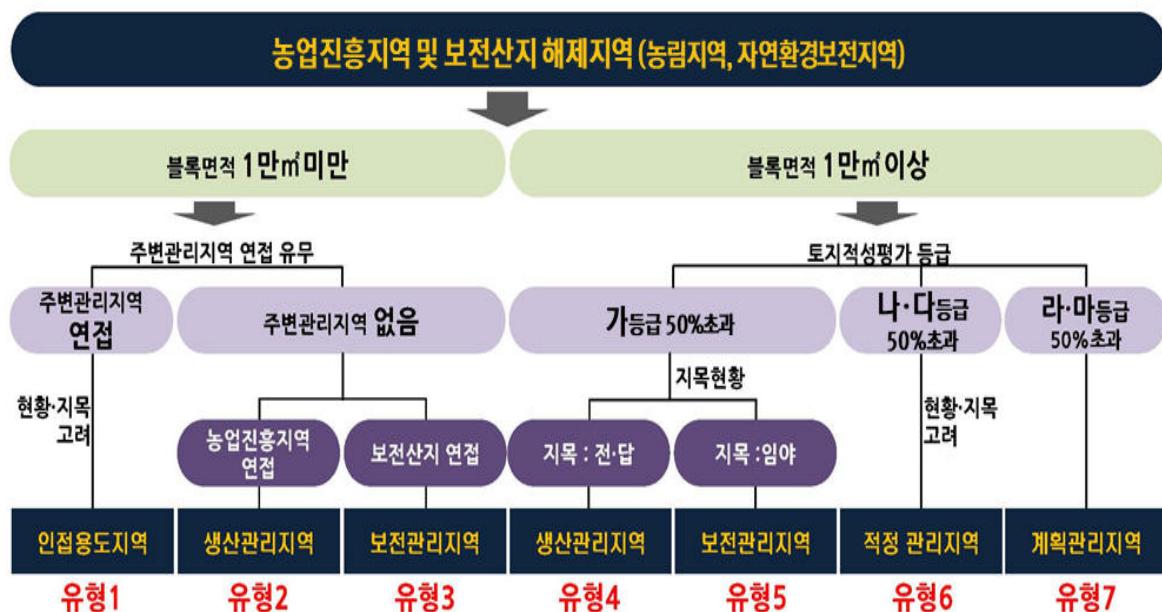
1) 도시지역

유형 1	<input type="radio"/> 용도지역 현실화(기개발지역)
유형 2	<input type="radio"/> 용도지역 현실화(하향결정)
유형 3	<input type="radio"/>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2) 비도시지역

유형 1	<input type="radio"/> 용도지역 현실화(기개발지역)
유형 2	<input type="radio"/> 연안면 지번 정리 및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유형 3	<input type="radio"/>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비도시지역 유형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유형을 유형 1~7로 분류
- 금회 202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서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유형은 유형1 및 유형6만 해당됨



나. 주거지역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의 세분 (국계법시행령 제30조)	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전용 주거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신시가지중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주택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 주거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균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간선도로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준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 혼재 인정 지역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2) 주거지역 결정현황

- 도시지역 85,019,346㎡ 중 주거지역 결정 면적은 17,203,830㎡로 20.2% 점유
- 주거지역 결정면적 17,203,830㎡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0.1%),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1,008㎡(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33,959㎡(6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9.3%), 준주거지역 1,324,869㎡(7.7%)로 구성
- 주거지역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없음

【 주거지역 결정 현황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주 거 지 역	계	17,203,830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1,008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33,959	6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9.3	
	준주거지역	1,324,869	7.7	

3) 주거지역 계획방향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주거지역 계획면적은 17.805㎢이고 관리계획 상 기결정된 면적은 17.204㎢가 계획되어 있어 0.601㎢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기개발지 주변과 용도 불합리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토지수요와 도시기본계획 상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되, 개발압력이 강하더라도 구체적 개발사업 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화용지 지양
- 향후, 부족한 주거지역 공급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적 개발 시 용도를 부여하여 결정 유도

4) 주거지역 결정(변경)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토지이용 현황상 주거지역이 적합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 강릉 도시지역

【 강릉도시 주거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거 지 역	소 계	12,076,243	감) 186,500	11,889,743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23,597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22,534	증) 8,415	3,030,949	25.5
	제2종일반주거지역	6,812,224	감) 195,646	6,616,578	55.7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9,414	-	1,289,414	10.8
	준주거지역	928,474	증) 731	929,205	7.8

■ 주문진 도시지역

【 주문진도시 주거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거 지 역	소 계	4,273,277	증) 4,905	4,278,182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59,886	증) 9,939	669,825	15.6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8,480	감) 5,085	3,113,395	72.8
	제3종일반주거지역	310,983	-	310,983	7.3
	준주거지역	183,928	증) 51	183,979	4.3

■ 옥계 도시지역

【 옥계도시 주거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거 지 역	소 계	854,310	증) 30,520	884,830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588	감) 280	238,308	26.9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255	증) 30,800	434,055	49.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12,467	-	212,467	24.0

다. 상업지역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의 세분 (국계법 시행령 제30조)	중심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중심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기반을 갖춘 지역 당해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일반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線的) 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 중심지 자동차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주거지역과는 분리,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를 고려
	근린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
	유통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2) 상업지역 결정현황

○ 도시지역 85,019,346㎡ 중 상업지역 결정 면적은 1,812,138㎡로 2.1%를 점유

○ 강릉시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만 결정되어 있음

【 상업지역 결정 현황 】

구 分		면 적(㎡)	구성비(%)	비고
상 업 지 역	계	1,812,138	100.0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1,630,318	90.0	
	근린상업지역	181,820	10.0	
	유통상업지역	—	—	

3) 상업지역 계획방향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상업지역 계획면적은 1.926㎢이고 관리계획 상 기결정된 면적은 1.812㎢가 계획되어 있어 0.114㎢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토지수요와 도시기본계획 상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되, 개발압력이 강하더라도 구체적 개발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화용지 지향
- 향후, 부족한 상업지역 공급은 공공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적 개발 시 용도를 부여하여 결정 유도

4) 상업지역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

【 강릉도시 상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 업 지 역	소 계	1,388,412	감)	5,748	1,382,664	100.0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1,299,288	감)	5,748	1,293,540	93.6
	근린상업지역	89,124	—	—	89,124	6.4
	유통상업지역	—	—	—	—	—

■ 주문진 도시지역(변경없음)

【 주문진도시 상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 업 지 역	소 계	317,996	—	317,996	100.0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225,300	—	225,300	70.8	—
	근린상업지역	92,696	—	92,696	29.2	—
	유통상업지역	—	—	—	—	—

■ 옥계 도시지역

【 옥계도시 상업지역 결정(변경) 】

구 分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 업 지 역	소 계	105,730	—	105,730	100.0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105,730	—	105,730	100.0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라. 공업지역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의 세분 (국계법시행령 제30조)	전용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전용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평坦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일반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
	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일상용품 공장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 수용지역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내지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 고려 지정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소 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

2) 공업지역 결정현황

- 도시지역 85,019,346㎡ 중 공업지역 결정 면적은 5,587,537㎡로 6.6%를 점유
- 공업지역 결정면적 5,587,537㎡는 일반공업지역 4,373,972㎡(77.7%), 준공업지역 1,256,123㎡(22.3%)로 결정되어 있음
- 강릉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만 결정되어 있음

【 공업지역 결정 현황 】

구 分		면 적(㎡)	구성비(%)	비고
공 업 지 역	계	5,587,537	100.0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4,331,414	90.0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포함
	준공업지역	1,256,123	—	

3) 공업지역 계획방향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공업지역 계획면적은 6.696km²로 관리계획 상 기결정된 면적은 5.588km²가 계획되어 있어 1.108km²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토지수요와 도시기본계획 상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되, 개발압력이 강하더라도 구체적 개발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화용지 지양

4) 공업지역 결정(변경없음)

■ 강릉 도시지역(변경없음)

【 강릉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업 지 역	소 계	2,131,046	—	2,131,046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998,283	—	998,283	46.8
	준공업지역	1,132,763	—	1,132,763	53.2

■ 주문진 도시지역(변경없음)

【 주문진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업 지 역	소 계	589,821	—	589,821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466,461	—	466,461	79.1
	준공업지역	123,360	—	123,360	20.9

■ 옥계 도시지역(변경없음)

【 옥계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업 지 역	소 계	2,347,298	—	2,347,298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347,298	—	2,347,298	100.0
	준공업지역	—	—	—	—

마. 녹지지역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지역의 세분 (국계법시행령 제30조)	<table border="1"> <tr> <td>보전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td></tr> <tr> <td>생산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td></tr> <tr> <td>자연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td></tr> </table>	보전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table border="1"> <tr> <td>보전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td></tr> <tr> <td>생산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td></tr> <tr> <td>자연녹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td></tr> </table>	보전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생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보전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생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2) 녹지지역 결정현황

- 도시지역 85,019,346㎡ 중 녹지지역 결정 면적은 53,850,183㎡로 63.3%를 점유
- 녹지지역 결정면적 53,850,183㎡중 보전녹지지역이 15,371,513㎡(28.5%), 생산녹지지역 4,078,179㎡(7.6%), 자연녹지지역 34,400,491㎡(63.9%)로 지정되어 있음

【 녹지지역 결정 현황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녹 지 지 역	계	53,850,183	100.0	
	보전녹지지역	15,371,513	28.5	
	생산녹지지역	4,078,179	7.6	
	자연녹지지역	34,400,491	63.9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포함

3) 녹지지역 계획방향

- 녹지지역 계획은 대상지의 성격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 계획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은 되도록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농지로서 기능 상실지는 용도 전환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 중 보전·생산 기능을 상실하여 계획적 개발 필요하나, 구체적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 향후 계획적 개발(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시 적정용도 부여
 - 금회,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없음

4) 녹지지역 결정(변경)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및 토지이용 현황(기개발지 또는 녹지기능 상실 지역 등) 반영하여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에서 보전녹지기능이 상실한 해제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 강릉 도시지역

【 강릉도시 녹지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41,578,162	증) 192,248	41,770,410	100.0
	보전녹지지역	12,574,800	감) 35,807	12,538,993	30.0
	생산녹지지역	3,440,722	감) 110,757	3,329,965	8.0
	자연녹지지역	25,562,640	증) 338,812	25,901,452	62.0

■ 주문진 도시지역

【 주문진도시 녹지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7,788,774	감) 12,145	7,776,629	100.0
	보전녹지지역	1,533,696	-	1,533,696	19.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255,078	감) 12,145	6,242,933	80.3

■ 옥계 도시지역

【 옥계도시 녹지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4,379,991	증) 280	4,380,271	100.0
	보전녹지지역	1,263,017	-	1,263,017	28.8
	생산녹지지역	637,457	증) 280	637,737	14.6
	자연녹지지역	2,479,517	-	2,479,517	56.6

바. 미지정지역

1) 개 요

구 分	주 요 내 용
용도지역 미세분 (국계법 제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행위제한 등 (국계법 제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미지정지역 결정현황

- 도시지역 85,019,346㎡ 중 미지정지역 결정면적은 6,565,658㎡로 7.7%를 점유하고 있음

【 미지정지역 결정 현황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미지정지역	6,565,658	100.0	

3) 미지정지역 계획방향

- 도시지역 주변 항만법상 항만구역 등을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해면지역을 미지정지로 지정 관리
- 신규 지번지에 대해서는 연접 용도지역을 부여

4) 미지정지역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변경없음)

【 강릉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지정지역	161,166	–	161,166	100.0	

■ 주문진 도시지역(변경없음)

【 주문진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지정지역	505,462	–	505,462	100.0	

■ 옥계 도시지역

【 주문진도시 공업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지정지역	5,899,030	(감)	314	5,897,716	100.0

사. 관리지역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2) 관리지역 결정현황

- 도시관리계획구역(행정구역 전체) 면적 1,046,881,326㎡ 중 관리지역 면적은 203,441,229㎡로 약 19.4%를 점유
- 관리지역 결정면적 203,441,229㎡ 중 보전관리지역이 36,100,438㎡(17.7%), 생산관리지역이 25,581,108㎡(12.6%), 계획관리지역이 141,800,754㎡(69.7%)로 지정되어 있음

【 관리지역 결정 현황 】

구 分		면 적(㎡)	구성비(%)	비고
관 리 지 역	계	203,441,229	100.0	
	보전관리지역	36,100,438	17.7	
	생산관리지역	25,581,108	12.6	
	계획관리지역	141,760,653	69.7	

3) 관리지역 계획방향

- 건축물 입지 및 경작지 등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 1개 필지 내 용도지역 혼재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 선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4) 관리지역 결정(변경)

【 관리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소 계	203,441,229	증) 193,272	203,634,501	100.0
	보전녹지지역	36,099,468	증) 61,613	36,161,081	17.8
	생산녹지지역	25,581,108	증) 106,028	25,687,136	12.6
	자연녹지지역	141,760,653	증) 25,631	141,786,284	69.6

아. 농림지역

1) 개 요

【 농림지역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농림지역 결정현황

- 도시관리계획구역(행정구역 전체) 면적 1,046,881,326m² 중 농림지역 면적은 636,647,867m²로 약 60.8%를 점유

【 농림지역 결정 현황 】

구 分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농 림 지 역	636,647,867	100.0	

3) 농림지역 계획방향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적정 용도지역 부여
- 건축물 입지 및 경작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

4) 농림지역 결정(변경)

【 농림지역 결정(변경)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농 림 지 역	636,647,867	감)	168,902	636,478,965	100.0

자. 농림지역

1) 개 요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요 】

구 分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계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2)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현황

- 도시관리계획구역(행정구역 전체) 면적 1,046,881,326m²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은 121,772,884m²로 약 60.8%를 점유

【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 현황 】

구 分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2,884	100.0	

3)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방향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

구 分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2,884	감)	16,816	121,756,068	100.0

차. 용도지역 변경 총괄

1) 용도지역(변경) 총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046,881,326	—	1,046,881,326	100.00	
도시지역 합 계	85,019,346	감) 7,554	85,011,792	8.12	
주 거 지 역	소 계	17,203,830	감) 151,075	17,052,755	1.63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23,597	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1,008	증) 18,074	3,939,082	0.38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33,959	감) 169,931	10,164,028	0.97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	1,600,397	0.15
	준주거지역	1,324,869	증) 782	1,325,651	0.13
상 업 지 역	소 계	1,812,138	감) 36,548	1,775,590	0.17
	일반상업지역	1,630,318	감) 36,548	1,593,770	0.15
	근린상업지역	181,820	—	181,820	0.02
공 업 지 역	소 계	5,587,537	—	5,587,537	0.53
	일반공업지역	4,331,414	—	4,331,414	0.41
	준공업지역	1,256,123	—	1,256,123	0.12
녹 지 지 역	소 계	53,850,183	증) 180,383	54,030,566	5.16
	보전녹지지역	15,371,513	감) 35,807	15,335,706	1.46
	생산녹지지역	4,078,179	감) 110,477	3,967,702	0.38
	자연녹지지역	34,400,491	증) 326,667	34,727,158	3.32
미 지 정 지 역	6,565,658	감) 314	6,565,344	0.63	
비도시지역 합계	961,861,980	증) 7,554	961,869,534	91.88	
관 리 지 역	소 계	203,441,229	증) 193,272	203,634,501	19.44
	보전관리지역	36,099,468	증) 61,613	36,161,081	3.45
	생산관리지역	25,581,108	증) 106,028	25,687,136	2.45
	계획관리지역	141,760,653	증) 25,631	141,786,284	13.54
농 림 지 역	636,647,867	감) 168,902	636,478,965	60.81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2,884	감) 16,816	121,756,068	11.63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2. 도시지역 면적에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

2) 강릉 도시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7,335,029	—	57,335,029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12,076,243	감) 186,500	11,889,743	20.74
	제1종전용주거지역	23,597	—	23,597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3,022,534	증) 8,415	3,030,949	5.29
	제2종일반주거지역	6,812,224	감) 195,646	6,616,578	11.54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9,414	—	1,289,414	2.25
상 업 지 역	준주거지역	928,474	증) 731	929,205	1.62
	소 계	1,388,412	감) 5,748	1,382,664	2.41
	일반상업지역	1,299,288	감) 5,748	1,293,540	2.26
공 업 지 역	근린상업지역	89,124	—	89,124	0.15
	소 계	2,131,046	—	2,131,046	3.72
	일반공업지역	998,283	—	998,283	1.74
녹 지 지 역	준공업지역	1,132,763	—	1,132,763	1.98
	소 계	41,578,162	증) 192,248	41,770,410	72.85
	보전녹지지역	12,574,800	감) 35,807	12,538,993	21.87
	생산녹지지역	3,440,722	감) 110,757	3,329,965	5.81
미 지 정 지 역	자연녹지지역	25,562,640	증) 338,812	25,901,452	45.17
	미 지 정 지 역	161,166	—	161,166	0.28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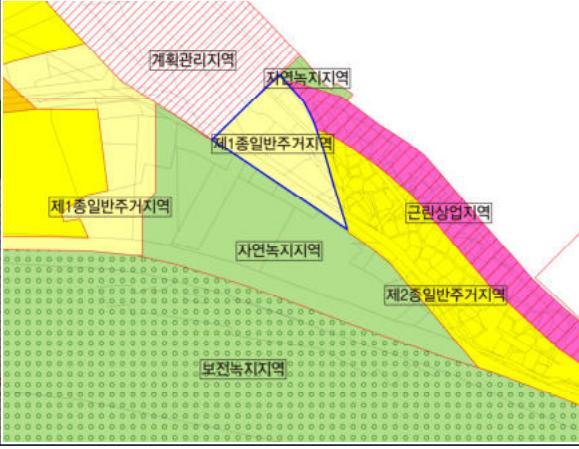
※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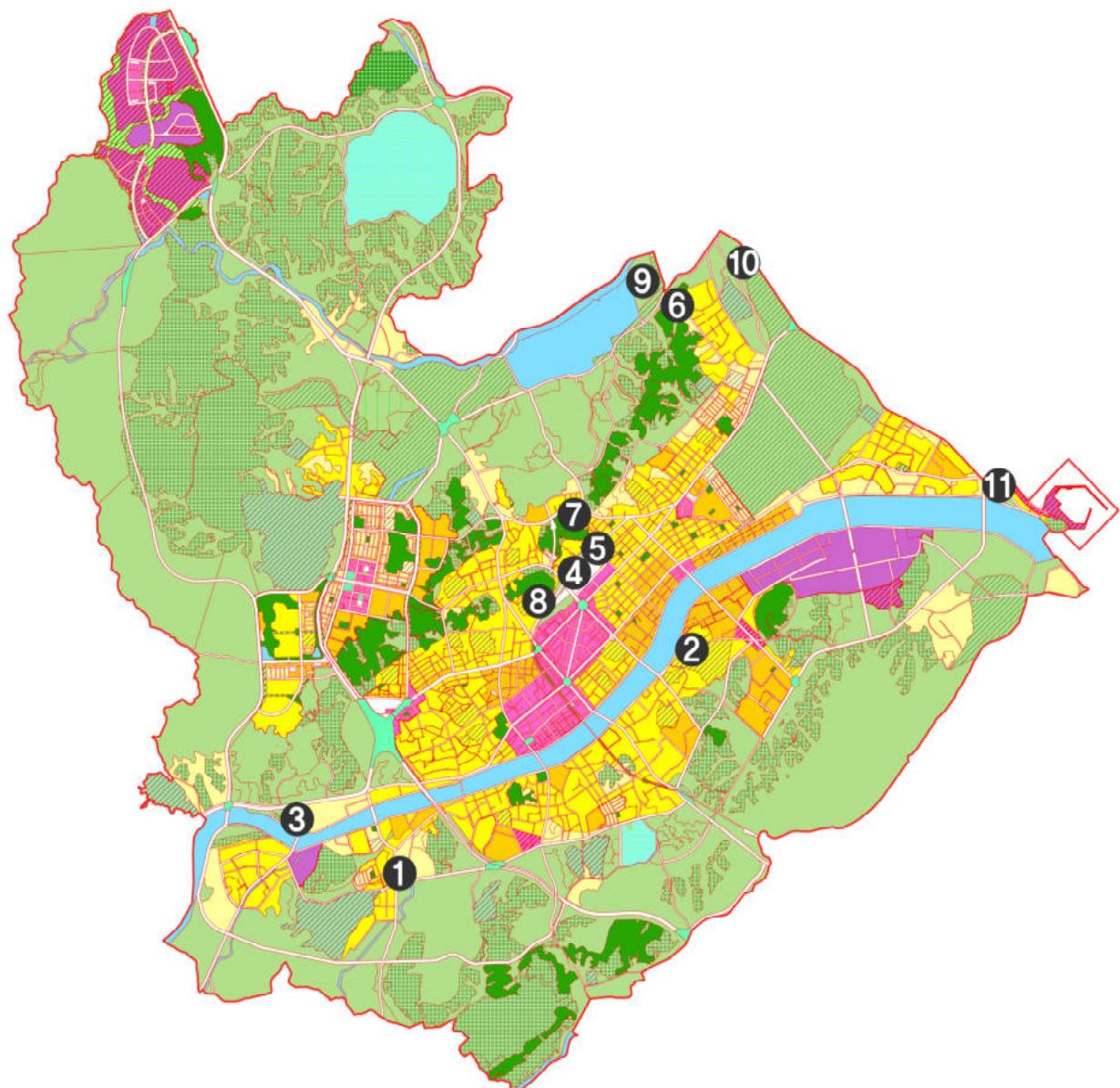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내곡동 328-2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76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폭원축소) 진행중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에 따라 용도지역 현실화
2	입암동 101-2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731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3	홍제동 771-3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361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4	교동 118-1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94,91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로 이용중인 강릉역 일원에 대한 동계올림픽 이후 국가 철도공단의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용도지역 현실화
5	교동 118 일원	일반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5,74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로 이용중인 강릉역 일원에 대한 동계올림픽 이후 국가 철도공단의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용도지역 현실화
6	초당동 213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6,319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현황 상 농경지 및 주택으로 이용되어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되어,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현실화를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7	교동 338-8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4,221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시설(공원) 해제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공원시설 및 공동 주택공사)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상 주차장 및 공사사무소 등으로 이용 되어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8	교동 234-7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5,267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로서 일부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불합리하게 1개 필지 2개 용도지역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 지역 현실화
9	초당동 505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96,312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관광·문화도시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 하여 체험 관광산업 육성(도시계획 시설: 연구시설 → 유원지)을 위한 용도지역 반영
10	강문동 136-1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4,44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당동 두부마을과 연접하여 공장 (초당두부공장)이 입지하였으며 농업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개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 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견소동 184-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6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안목카페거리 일원으로 식당 등 근린생활 시설 증가에 따라 안목해변 및 안목해맞이공원 관광·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도시관리계획

8	교동 234-7 일원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9	초당동 505 일원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10	강문동 136-1 일원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11	견소동 184-1 일원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강릉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도 】



3) 주문진 도시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475,330	감) 7,240	13,468,090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4,273,277	증) 4,905	4,278,182	31.77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59,886	증) 9,939	669,825	4.97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8,480	감) 5,085	3,113,395	23.12
	제3종일반주거지역	310,983	—	310,983	2.31
상 업 지 역	준주거지역	183,928	증) 51	183,979	1.37
	소 계	317,996	—	317,996	2.36
	일반상업지역	225,300	—	225,300	1.67
공 업 지 역	근린상업지역	92,696	—	92,696	0.69
	소 계	589,821	—	589,821	4.38
	일반공업지역	466,461	—	466,461	3.46
녹 지 지 역	준공업지역	123,360	—	123,360	0.92
	소 계	7,788,774	감) 12,145	7,776,629	57.74
	보전녹지지역	1,533,696	—	1,533,696	11.39
	생산녹지지역	—	—	—	—
미 지 정 지 역	자연녹지지역	6,255,078	감) 12,145	6,242,933	46.35
	미 지 정 지 역	505,462	—	505,462	3.75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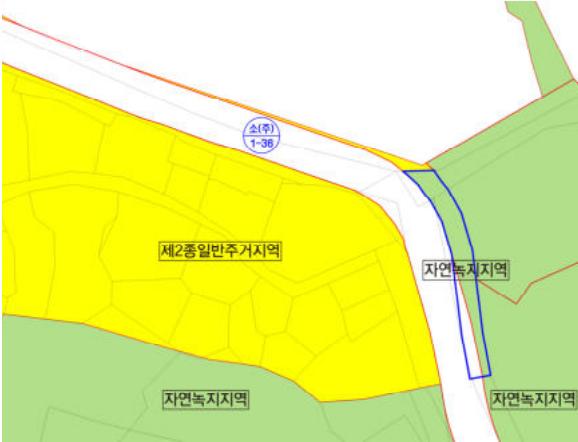
※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주문진읍 주문리 791-9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41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 특산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시설(사육실, 실험실 등) 공간 및 수량 부족으로 동해수산 연구소 양식연구센터 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동해수산연구소 용도지역 변경
2	주문진읍 주문리 791-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264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 특산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시설(사육실, 실험실 등) 공간 및 수량 부족으로 동해수산 연구소 양식연구센터 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동해수산연구소 용도지역 변경
3	연곡면 동덕리 426-16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561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4	주문진읍 주문리 271-19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51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5	사천면 사천진리 8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927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6	사천면 사천진리 53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464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7	사천면 사천진리 224-2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269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8	연곡면 영진리 2-3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6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9	연곡면 동덕리 1400 일원	자연녹지 지역	농림지역	7,24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도시관리계획

1,2	주문진읍 주문리 791-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연곡면 동덕리 426-16 일원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주문진읍 주문리 271-1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5	사천면 사천진리 8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6	사천면 사천진리 5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7	사천면 사천진리 224-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8	연곡면 영진리 2-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9	연곡면 동덕리 1400 일원 (자연녹지지역 → 농림지역)
			

【 주문진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도 】



4) 옥계 도시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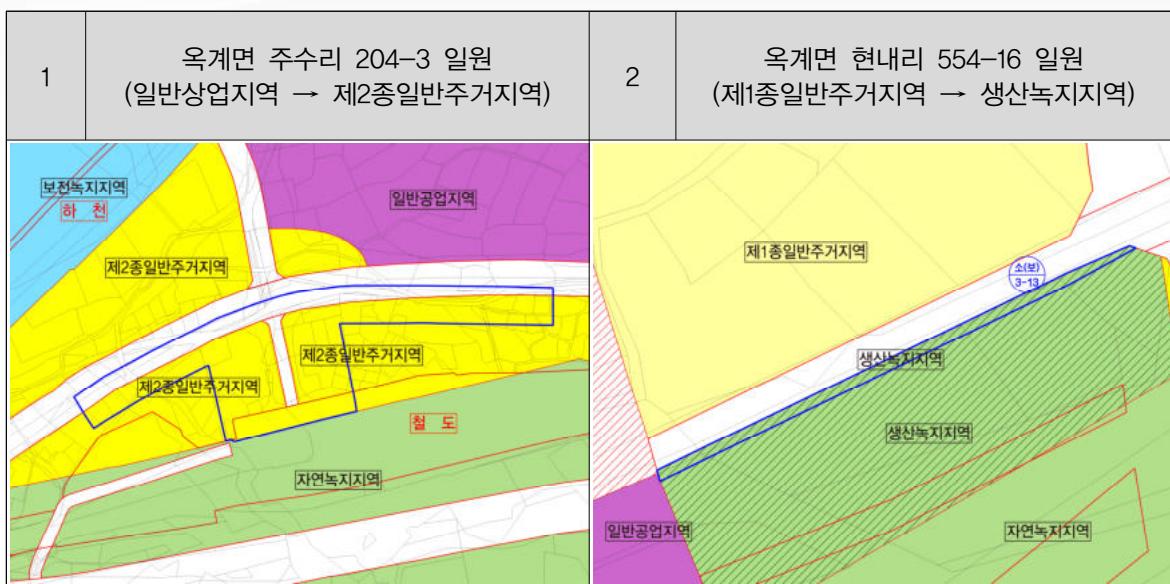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586,359	감) 314	13,586,045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854,310	증) 30,520	884,830	6.5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588	감) 280	238,308	1.7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255	증) 30,800	434,055	3.1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상 업 지 역	준주거지역	212,467	—	212,467	1.56	
	소 계	105,730	감) 30,800	74,930	0.55	
	일반상업지역	105,730	감) 30,800	74,930	0.55	
공 업 지 역	근린상업지역	—	—	—	—	
	소 계	2,347,298	—	2,347,298	17.28	
	일반공업지역	2,347,298	—	2,347,298	17.28	
녹 지 지 역	준공업지역	—	—	—	—	
	소 계	4,379,991	증) 280	4,380,271	32.24	
	보전녹지지역	1,263,017	—	1,263,017	9.30	
	생산녹지지역	637,457	증) 280	637,737	4.69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479,517	—	2,479,517	18.25	
	미 지 정 지 역	5,899,030	감) 314	5,898,716	43.43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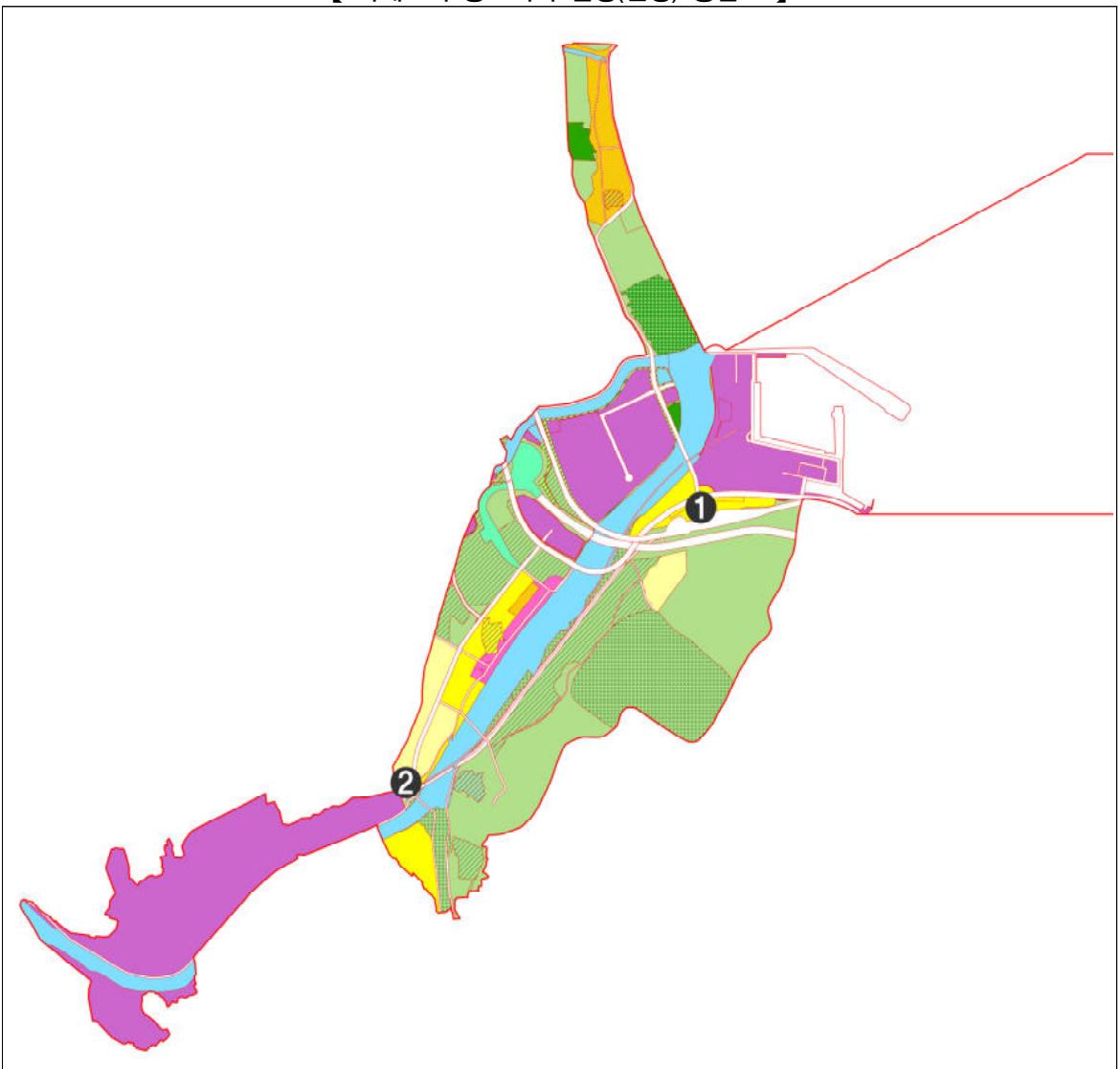
※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옥계면 주수리 204-3 일원	일반상업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0,800	250%	• 옥계역 여객 영업이 종단된 이후 역사주변으로 토지이용현황 상 상업기능을 상실하여 취락지구 형태로 유지되는 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
2	옥계면 현내리 554-16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생산녹지 지역	280	1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2020.7.1.)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옥계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도 】



5) 비도시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961,861,980	증) 7,554	961,869,534	100.00	
관 리 지 역	소 계	203,441,229	증) 193,272	203,634,501	21.17	
	보전관리지역	36,099,468	증) 61,613	36,161,081	3.76	
	생산관리지역	25,581,108	증) 106,028	25,687,136	2.67	
	계획관리지역	141,760,653	증) 25,631	141,786,284	14.74	
농 림 지 역		636,647,867	감) 168,902	636,478,965	66.17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72,884	감) 16,816	121,756,068	12.66	

※ 기정 : 강릉시 고시 제2023-374호(2023.10.16.)

※ 주) 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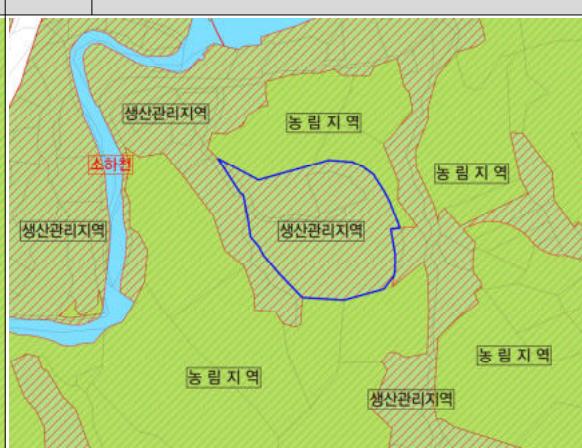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사천면 사기막리 248-4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89,904	80%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
2	왕산면 대기리 2720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59,028	80%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
3	연곡면 송림리 40-9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1,309	100%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
4	왕산면 고단리 625-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1,942	80%	•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5	성산면 산북리 65-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589	80%	•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6	사천면 사기막리 283-3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15,831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주택 및 경작지로 사용 중에 있어 보전용도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7	왕산면 목계리 172-4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8,333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8	왕산면 목계리 201-4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8,243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9	왕산면 목계리 170-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2,567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10	구정면 금광리 59-2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4,941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 차량기지 및 도로 건설로 인하여 보전용도 기능이 상실된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1	성산면 위촌리 754-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45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이 입지한 보전산지 해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강동면 모전리 216-1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5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공장용지로 토지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3	성산면 산북리 65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353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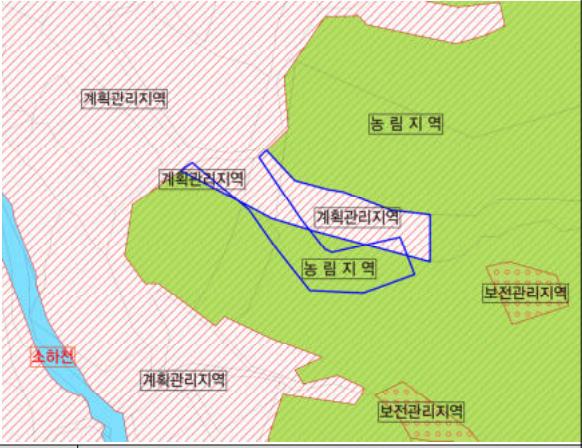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4	강동면 정동진리 440-29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16,816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선(정동진역) 유휴지에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는 기개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강동면 정동진리 50-175 일원	미지정	계획관리 지역	314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동진항(공유수면 매립지) 진입 도로로 활용 중에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부여
16	왕산면 고단리 산369-1 일원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4,416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17	성산면 산북리 산79 일원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589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18	왕산면 목계리 산460-13 일원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8,44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19	왕산면 목계리 산245 일원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10,41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20	성산면 산북리 산79- 1일원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1,199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경계정리에 따른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 지역으로 용도지역 경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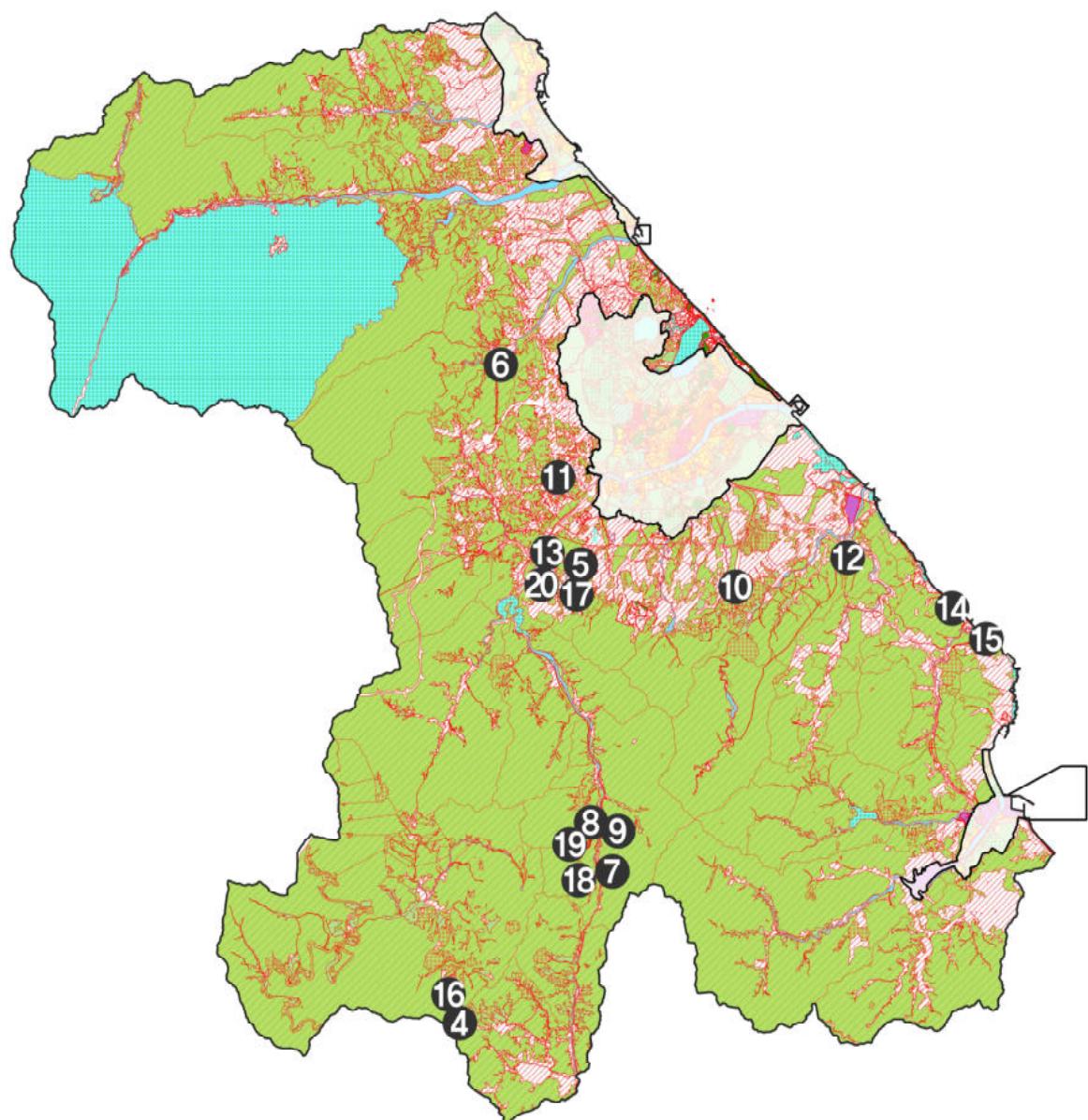
1	사천면 사기막리 248-4 일원 외 15개소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2	왕산면 대기리 2720 일원 외 19개소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3	연곡면 송림리 40-9 일원 외 2개소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4, 16	왕산면 고단리 625-31 일원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5, 17	성산면 산북리 65-3 일원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6	사천면 사기막리 283-3 일원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

7, 18	왕산면 목계리 172-4 일원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8, 19	왕산면 목계리 201-4 일원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9	왕산면 목계리 170-1 일원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10	구정면 금광리 59-2 일원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1	성산면 위촌리 754-1 일원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2	강동면 모전리 216-1 일원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3, 20	성산면 산북리 65 일원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14	강동면 정동진리 440-29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15	강동면 정동진리 50-175 일원 (미지정지 → 계획관리지역)		
		—	

【 비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도 】



3 용도지구 계획

1. 기본방향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
- 공공의 질서와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할 때, 용도지역 계획만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용도지역의 보완적 차원으로 계획
- 관련계획 및 관련법상의 계획 및 규제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으로 지정
- 기정계획 및 경과조치에 대한 지구계획을 가급적 수용하되, 기준미달 지역 변경

2. 용도지구의 개념

- 용도지구는 도시의 국지적이나 특정 목적의 토지이용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 고도 등의 규제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필요시 2개 이상의 용도지구 중복지정 가능

3. 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용도지구 분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지 정 목 적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특화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계속)

구 분		지정 목적
보호 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 지구	자연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 진흥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4. 용도지구 결정(변경)

가. 경관지구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토계획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구의 세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구 분		주 요 내 용
	자연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 · 구릉지 · 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 국립공원 · 도시자연공원 · 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 계획 수립지침	시가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 대상지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 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 ·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거나 상징적인 가로변을 형성하는 등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킬로미터정도 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미터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이 된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특화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자연적 · 생태적 ·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하천변 · 호소변 · 해안 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사적지 · 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 등)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

2) 경관지구 계획방향

- 자연경관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관지구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제약으로 지구 지정 지양
- 건축물 등이 입지한 기 훼손된 지역으로 경관지구 지정 의미를 상실하여 변경

3) 경관지구 결정(변경)

가)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6	포남3지구	자연 경관지구	포남동 998-25 일원	25,500	-	-	건설부고시 제20호 (1986.01.18.)	강릉
변경	1-6	포남3지구	자연 경관지구	포남동 998-25 일원	23,979	-	-	건설부고시 제20호 (1986.01.18.)	강릉

나) 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포남3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A=25,500m²→23,979 감)1,52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단독주택)이 입지한 기 훼손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 지정 의미를 상실하여 변경

나. 고도지구

1)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지정목적 (국토계획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고도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증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본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 · 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고도지구 계획방향

- 기정 고도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3) 고도지구 결정(변경)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1	주문5리지구	고도지구	주문진읍 주문리 70 일원	5층 이하 (20m 이하)	18,90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주문진
폐지	2-2	교항6리지구	고도지구	주문진읍 교항리 81-63 일원	5층 이하 (20m 이하)	61,20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주문진
폐지	2-3	영진리지구	고도지구	연곡면 영진리 357-84 일원	5층 이하 (20m 이하)	29,59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주문진
폐지	2-4	사천진리지구	고도지구	사천면 사천진리 262 일원	5층 이하 (20m 이하)	63,270	강원도고시 제2002-112호 (2002.05.13.)	주문진
폐지	1-1	금진지구	고도지구	옥계면 금진리 200-6 일원	5층 이하 (20m 이하)	179,629	강원도고시 제2002-111호 (2002.05.13.)	옥계

나)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주문5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A = 18,900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지정된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2-2	교항6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A = 61,200 m² 	
2-3	영진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A = 29,590 m² 	
2-4	사천진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A = 63,270 m² 	
1-1	금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A = 179,629 m² 	

다. 방화지구

1)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지정목적 (국토계획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방화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 화재발생시 폭발 ·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 산림청의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하여 산불 확산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방화지구 계획방향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방화지구 기능 상실로 인한 지구경계 축소 및 폐지

3) 방화지구 결정(변경)

가)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1	중앙지구	옥천동, 임당동 일원	–	969,500	강원도고시 제88-140호 (1988.12.03.)	강릉
변경	4-1	중앙지구	옥천동, 임당동 일원	–	843,106	강원도고시 제88-140호 (1988.12.03.)	강릉
폐지	2	주수지구	옥계면 주수리 214-5 일원	–	23,500	강원도고시 제2002-111호 (2002.05.13.)	옥계

나)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중앙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A = 969,500m² → 843,106m² 감) 126,39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상업지역)과 일치하여 원활한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 및 면적오류 정정
2	주수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23,5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변경에 따른 방화지구 기능 상실로 폐지

라. 취락지구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토계획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지구의 세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자연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자연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 	
	집단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2) 취락지구 계획방향

- 기정 구역계의 불합리한 부분 조정 및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밀집된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를 신규 지정

3) 취락지구 결정(변경)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취락 지구 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10	교동2지구	자연 취락지구	교동 491 일원	-	103,774	강원도고시 제2010-278호 (2010.8.20.)	강릉
변경	6-10	교동2지구	자연 취락지구	교동 491 일원	-	116,527	강원도고시 제2010-278호 (2010.8.20.)	강릉
기정	6-15	노암3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25 일원	-	63,981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8.23.)	강릉
변경	6-15	노암3지구	자연 취락지구	노암동 25 일원	-	73,121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8.23.)	강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취락 지구 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6-18	두산지구	자연 취락지구	두산동 179-8 일원	-	52,924	-	강릉
신설	6-20	초당지구	자연 취락지구	초당동 309-2 일원	-	377,580	-	강릉
신설	6-24	입암2지구	자연 취락지구	청량동 584-1 일원	-	31,887	-	강릉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10	교동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A = 103,774\text{m}^2 \rightarrow 116,527\text{m}^2$ (증)12,75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락지구 주변의 주민 생활상 및 개발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기개발지로 주택의 정비 등을 필요로 한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취락지구 변경
6-15	노암3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A = 63,981\text{m}^2 \rightarrow 73,121\text{m}^2$ (증)9,140m² 	
6-18	두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A = 52,924\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기개발지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
6-20	초당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A = 377,580\text{m}^2$ 	
6-24	입암2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A = 31,887\text{m}^2$ 	

마. 개발진흥지구

1)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국토계획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역의 세분 (국계법 시행령 제31조)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 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 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
	관광·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 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산업 · 유통, 관광 · 휴양 등의 기능 이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

2) 개발진흥지구 계획방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기능 상실로 해제

3)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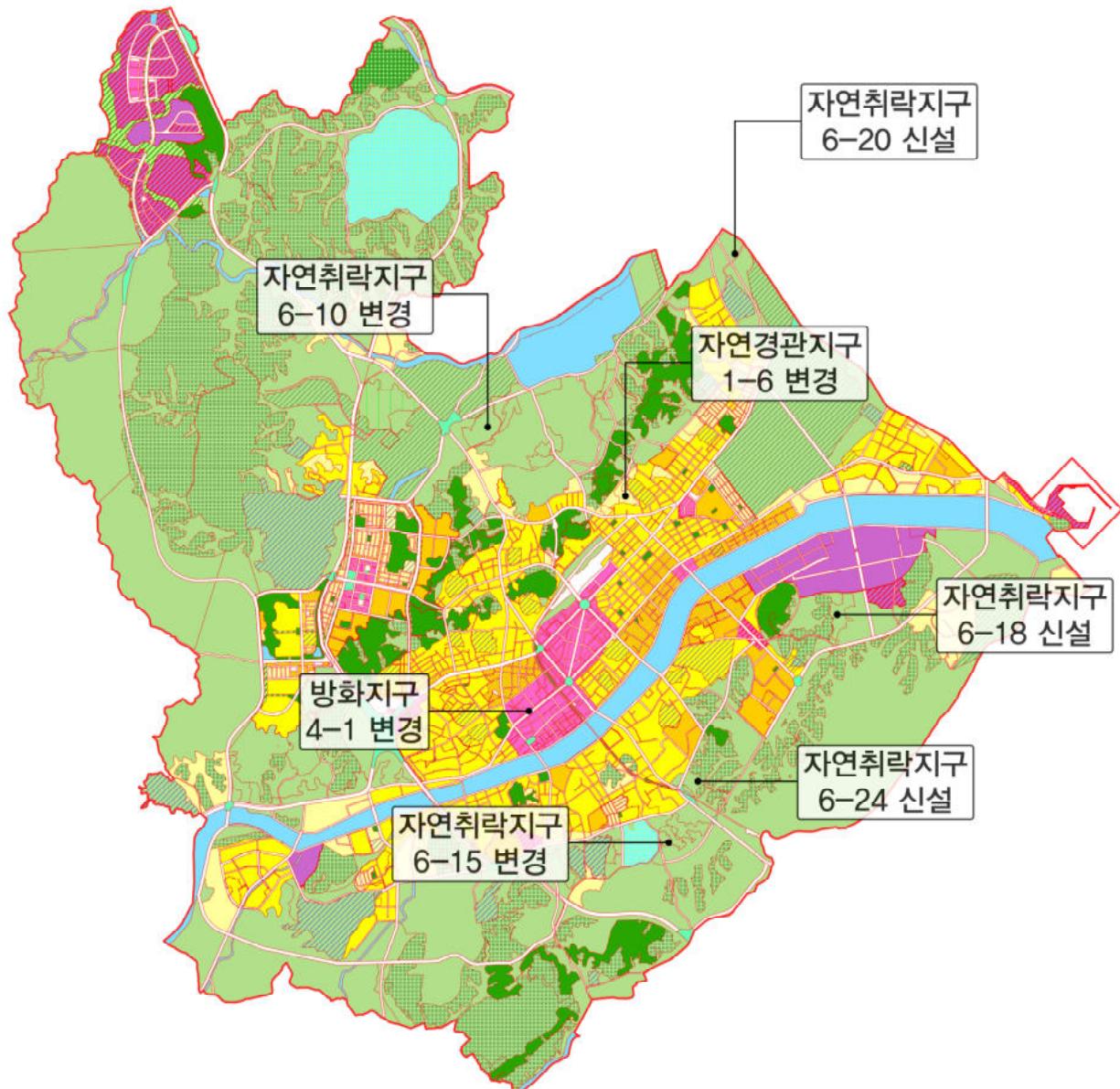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개발진흥 지구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1-1	구산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성산면 구산리 400-2 일원	-	293,537	(1995.11.24.)	비도시
폐지	21-3	여찬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구정면 여찬리 385-15 일원	-	127,000	강릉시고시 제96-162호 (1996.12.19.)	비도시
폐지	21-4	안인진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강동면 안인진리 109-9 일원	-	165,600	강릉시고시 제97-31호 (1997.04.01.)	비도시
폐지	21-13	미노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사천면 미노리 395 일원	-	740,744	강릉시고시 제96-174호 (1996.12.31.)	비도시
폐지	21-42	학산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구정면 학산리 656-102 일원	-	17,336	(1998.03.03.)	비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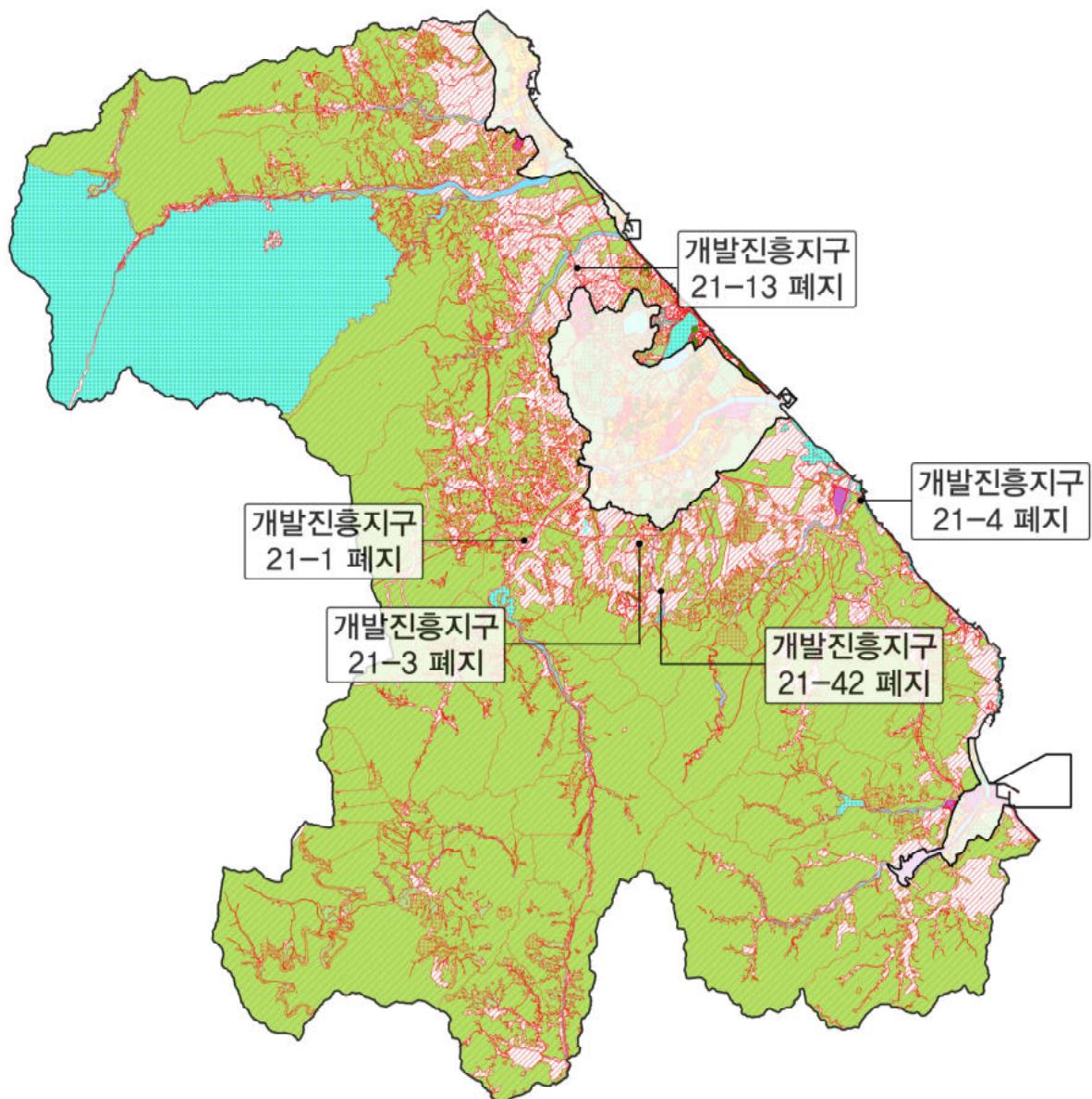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구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293,537\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시기 (22.12)가 도래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기능 상실로 해제
21-3	여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127,000\text{m}^2$ 	
21-4	안인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165,600\text{m}^2$ 	
21-13	미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740,744\text{m}^2$ 	
21-42	학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A = 17,336\text{m}^2$ 	

【 강릉도시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도 】



【 비도시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도 】



4 도시계획시설 계획

1. 기본방향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전략에 부합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및 입지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 도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기반시설 설치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기정 도시지역 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시설 및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함
 - 도시기반시설은 강릉시의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향후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

2.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가. 기반시설의 개념

-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의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중 동법 제30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세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가능
 -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2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중복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입체적 결정이 가능함
- 도시의 기능수행 및 성장,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 등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이 부여됨
-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

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크게 7개(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세부시설은 총 54종으로 구분됨

【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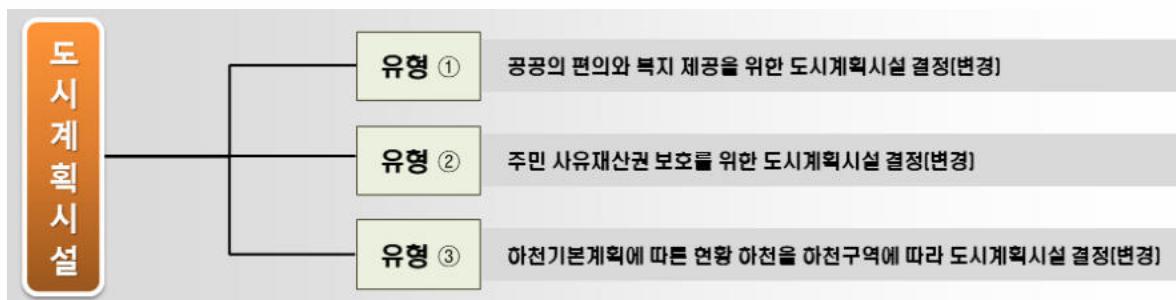
구 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교통시설 (8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철도 :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공간시설 (5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공원 : 국가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 공원 •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유통·공급시설 (9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물류센터, 가축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 (8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 문화시설 :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지방 문화원, 문화산업진흥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방재시설 (8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 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 유수지 : 유수시설, 저류시설 • 저수지 : 댐, 제방
보건위생시설 (3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간선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방향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입지 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시설의 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변경 또는 폐지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 시설의 위치·규모·기능 및 여건변화 등 시 전체를 고려한 계획적 검토
- 지장물 및 지형현황 등 자연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 판단

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기준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검토 → 변경 및 제척
-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 다른 용도로 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 제척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변경 검토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공간시설

1) 공원

가) 시설의 개요

- “공원”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에 의한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 및 방재공원으로 세분함

【 공원의 분류 및 설치 목적 】

구 분	설 치 목 적
생활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주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역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농업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방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나) 결정기준

- 시설 확보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 시설의 확보기준 】

구 分	확 보 기 준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제외)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
- 각각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 완화를 위한 녹지계통 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계획

【 시설의 유치거리 및 규모 】

구 分		설 치 기 준	유치거리	규 모	공원시설 부지비율
대분류	중분류				
생활권 공원	소 공 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0%이하
		제한 없음	250m이하	1,500㎡이상	60%이하
	근 린 공 원	근린생활권	제한 없음	500m이하	1만㎡이상
		도 보 권	제한 없음	1,000m이하	3만㎡이상
		도시지역권	기능발휘 가능지	제한 없음	10만㎡이상
		광 역 권	기능발휘 가능지	제한 없음	100만㎡이상
	역 사 공 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제 공원	문 화 공 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 변 공 원	친수공간 조성가능한 곳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0%이하
	묘 지 공 원	시가화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	제한 없음	10만㎡이상	20%이하
	체 육 공 원	기능발휘	제한 없음	1만㎡이상	50%이하
				3만㎡이상	50%이하
				10만㎡이상	50%이하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만㎡이상	40%이하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기준이하 허용하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 안에서 새로운 공원의 계획을 위한 경우, 새로이 계획하고자 하는 공원의 유치권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공원의 기능이 있는 경우

다) 공원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m ²)				시가화구역(m ²)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4	558,635	4	558,635	—	—	—	—
도시자연공원	3	535,393	—	—	—	—	—	—
근린공원	—	—	4	558,635	—	—	—	—
문화공원	1	23,242	—	—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558,635	—	558,635	—	
소계		도시자연공원		—	535,393	감)535,393	—	—	
폐지	2	장현공원	도시 자연공원	장현동 산4 일원	341,151	감)341,151	—	건설부 제37호 (1976.03.27.)	
폐지	4	두산공원	도시 자연공원	두산동 산57-1 일원	112,664	감)112,664	—	건설부 제37호 (1976.03.27.)	
폐지	8	포남공원	도시 자연공원	포남동 산215 일원	81,578	감) 81,578	—	건설부 제20호 (1986.01.18.)	
소계		근린공원		—	23,242	증)535,393	558,635	—	
변경	27	성덕공원	근린공원	입암동 산01번지 일원	23,242	—	23,242	강원도 제2015-194호 (2015.05.29.)	문화공원 → 근린공원
신설	28	장현공원	근린공원	장현동 산4번지 일원	—	증)341,151	341,151	—	
신설	29	두산공원	근린공원	두산동 산57-1 일원	—	증)112,664	112,664	—	
신설	30	포남공원	근린공원	포남동 산215 일원	—	증) 81,578	81,57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장현공원 (도시자연공원)	• 폐지 • A=341,151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4	두산공원 (도시자연공원)	• 폐지 • A=112,664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8	포남공원 (도시자연공원)	• 폐지 • A=81,578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27	성덕공원 (근린공원)	• 변경(문화공원→근린공원) • A=23,242m ² →23,242m ²	•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유자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원으로 시설종류 변경 (문화공원→근린공원)
28	장현공원 (근린공원)	• 신설 • A=341,151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
29	두산공원 (근린공원)	• 신설 • A=112,664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
30	포남공원 (근린공원)	• 신설 • A=81,578m ²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

■ 옥계 도시지역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m ²)				시가화구역(m ²)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	-	1	31,872	-	-	-	-
근린공원	-	-	1	31,872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 31,872	31,872	-	
신설	1	금진공원	근린공원	옥계면 금진리 산96 일원	-	증) 31,872	31,872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금진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A=31,87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시설(신영공원 : 499,596m²) 실효에 따라 옥계 도시지역 내 공원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공유지에 균린공원 신설

2) 유원지

가) 시설의 개요

-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상하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함

나) 결정기준

-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 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 시냇가·강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다) 유원지 결정(변경)

■ 주문진 도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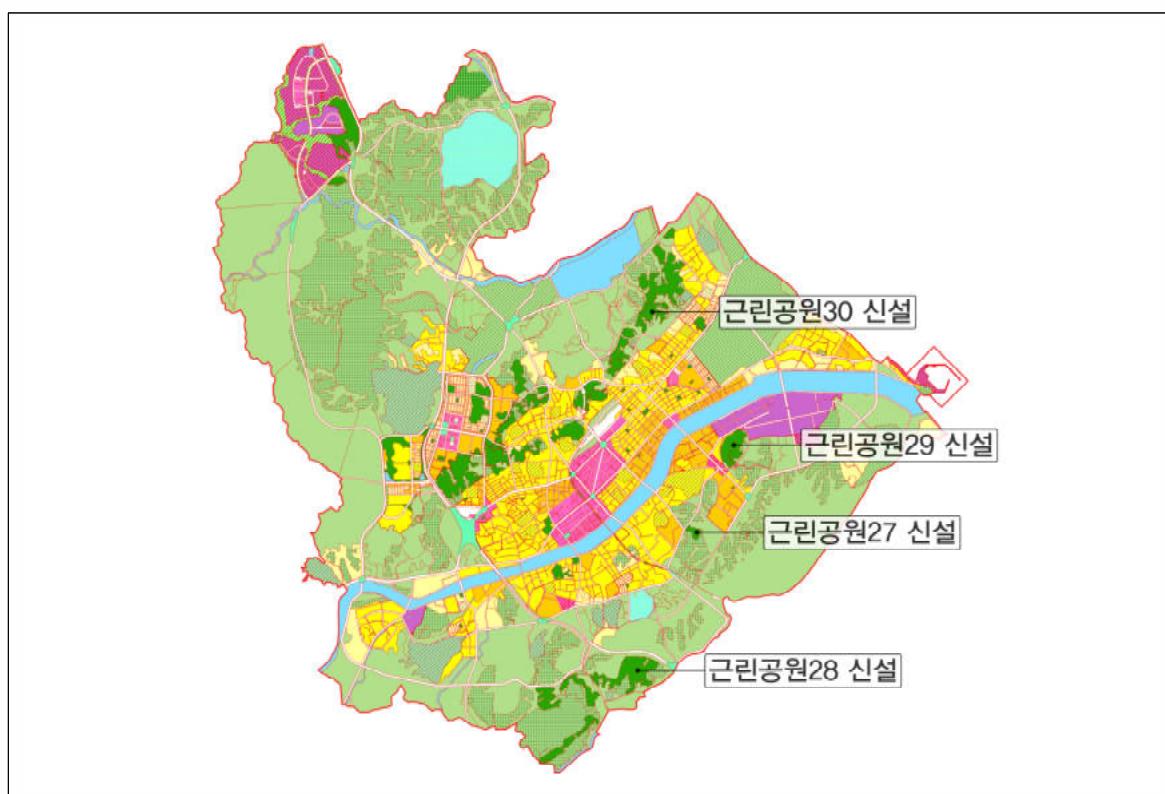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향호유원지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 일원	401,610	증) 327,127	728,737	강릉시 제2711호 (1974.09.05.)	

○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향호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A=401,610m²→728,737m² 증) 327,12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호유원지 내 위치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이 향호를 이용하여(생존수영, 구조강습 등) 유원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향호를 포함하여 유원지를 변경하고자 함

【 강릉도시 공간시설 결정(변경) 총괄도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시설의 개요

-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함

【 학교의 종류 】

구 분	학 교 의 종 류
유아교육법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나) 결정기준

-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 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 유지
-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통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 지양
-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 설치, 학교 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 공간을 계획
- 초등학교는 2개의 균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고등학교는 3개 균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
-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 학교 배치 및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 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다) 학교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	강릉 중학교	학교	입암동 497 일원	30,660	증) 6,531	37,191	강릉시교육청고시 제13호 (1986.12.16.)	
변경	17	경포 중학교	학교	노암동 462-1 일원	31,092	증) 3,415	34,507	강원도고시 제82-109호 (1982.08.14.)	
변경	4	남산 초등학교	학교	내곡동 125 일원	15,821	증) 1,493	17,314	강원도고시 제82-57호 (1982.05.03.)	
변경	6	성덕 초등학교	학교	입암동 625-1 일원	16,381	증) 1,422	17,803	강원도고시 제82-109호 (1982.08.14.)	
변경	7	영동 초등학교	학교	교동 1038 일원	14,516	증) 1,266	15,782	강원도고시 제82-74호 (1982.05.25.)	
변경	8	옥천 초등학교	학교	옥천동 112-1 일원	16,780	증) 993	17,773	강원도고시 제82-109호 (1982.08.14.)	
변경	11	노암 초등학교	학교	노암동 415-2 일원	56,070	증) 12,09 2	68,162	강릉시고시 제94-217호 (1977.12.21.)	
변경	32	초당 초등학교	학교	초당동 산16 일원	21,915	감) 1,828	20,087	강원도고시 제91-12호 (1991.02.05.)	
변경	35	중앙 초등학교	학교	입암동 산13-1 일원	7,470	증) 8,919	16,389	강원도고시 제88-140호 (1988.12.03.)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강릉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30,660\text{m}^2 \rightarrow 37,191\text{m}^2$ 증)6,531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17	경포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31,092\text{m}^2 \rightarrow 34,507\text{m}^2$ 증)3,415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4	남산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5,821\text{m}^2 \rightarrow 17,314\text{m}^2$ 증)1,493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6	성덕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6,381\text{m}^2 \rightarrow 17,803\text{m}^2$ 증)1,422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7	영동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4,516\text{m}^2 \rightarrow 15,782\text{m}^2$ 증)1,266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8	옥천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6,780\text{m}^2 \rightarrow 17,773\text{m}^2$ 증)993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11	노암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56,070\text{m}^2 \rightarrow 68,162\text{m}^2$ 증)12,092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32	초당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21,915\text{m}^2 \rightarrow 20,087\text{m}^2$ 감)1,828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35	중앙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7,470\text{m}^2 \rightarrow 16,389\text{m}^2$ 증)8,919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 주문진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주영 초등학교	학교	주문진읍 주문리 461 일원	26,010	증) 2,048	28,058	강원도고시 제82-109호 (1982.08.04.)	
변경	5	신영 초등학교	학교	주문진읍 주문리 829-1 일원	33,290	증) 7,062	40,352	강원도고시 제87-43호 (1987.04.18.)	
변경	6	연곡 초등학교	학교	연곡면 동덕리 959 일원	19,170	증) 2,149	21,319	강릉시고시 제2002-79호 (2002.06.0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주영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26,010m^2 \rightarrow 28,058m^2$ 증) 2,048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5	신영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33,290m^2 \rightarrow 40,352m^2$ 증) 7,062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6	연곡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9,170m^2 \rightarrow 21,319m^2$ 증) 2,149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 옥계 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옥계 초등학교	학교	옥계면 현내리 344-1 일원	19,722	증) 1,618	21,340	강원도고시 제86-148호 (1986.12.26.)	

도시관리계획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옥계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9,722\text{m}^2 \rightarrow 21,340\text{m}^2$ 증) $1,618\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 비도시지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강원예술 고등학교	학교	구정면 제비리 132-2 일원	127,779	감) 41,260	86,519	강릉시고시 제1998-97호 (1998.08.08.)	
변경	5	구정 초등학교	학교	구정면 학산리 393 일원	16,449	증) 2,678	19,127	강릉시고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6	금광 초등학교	학교	구정면 금광리 858-3 일원	14,665	증) 2,520	17,185	강릉시고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8	송양 초등학교	학교	성산면 위촌리 600 일원	6,284	증) 2,383	8,667	강릉시고시 제2010-86호 (2010.08.23.)	
변경	10	운양 초등학교	학교	사천면 판교리 91 일원	10,684	증) 3,337	14,021	강릉시고시 제2010-86호 (2010.08.23.)	
신설	19	운산분교	학교	운산동 148 일원	-	증) 7,506	7,506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강원예술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27,779\text{m}^2 \rightarrow 86,519\text{m}^2$ • 감)41,260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5	구정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6,449\text{m}^2 \rightarrow 19,127\text{m}^2$ • 증)2,678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6	금광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4,665\text{m}^2 \rightarrow 17,185\text{m}^2$ • 증)2,520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8	송양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6,284\text{m}^2 \rightarrow 8,667\text{m}^2$ • 증)2,383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10	운양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A = 10,684\text{m}^2 \rightarrow 14,021\text{m}^2$ • 증)3,337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19	운산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A = 7,506\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유 학교 사용지에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2) 공공청사

가) 시설의 개요

- “공공청사”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교정시설

나) 결정기준

-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 및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 중추적인 시설 :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
 - 국지적인 시설 :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설치

-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
-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 고려
- 물류·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6	강릉 경찰서	공공청사	포남동 1113 일원	-	증) 16,023	16,023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강릉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A = 16,02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40년 이상) 강릉경찰서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신축) 및 강릉시민의 안녕질서 및 생명·재산 보호 등의 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로 지정

3) 연구시설

가) 시설의 개요

-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나) 결정기준

-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소음·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다) 연구시설 결정(변경)

■ 주문진 도시지역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연구시설	주문진읍 주문리 791-1 일원	-	증) 7,451	7,451	-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A = 7,45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수산생물 연구 및 해양환경 연구 등을 위한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연구센터(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확장으로 연구기능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시설로 지정

다. 방재시설

1) 하천

가) 시설의 개요

- “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함

【 하천의 구분 】

구 분	정 의
국가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 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나) 결정기준

-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할 것
- 빗물에 의한 제내지(堤内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
- 하천은 원칙적으로 미복개 원칙
 -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 가능
-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
 -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 가능

다) 하천 계획방향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현황 하천(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라) 하천 결정(변경)

■ 강릉 도시지역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모솔천	소하천	지변동 692	교동 1228-1	-	0.50	20~48	19,252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모솔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0.50km, A = 19,252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 비도시지역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기정	1	사천천	지방하천	사기막리 산270-1	미노리 454-31	-	10.35	50~150	964,088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1	사천천	지방하천	사기막리 산270-1	미노리 454-31	-	10.46	50~150	1,004,184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2	도마천	지방하천	목계리 산237-1	도마리 734-4	-	8.75	20~130	539,905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2	도마천	지방하천	목계리 산237-1	도마리 858-6	-	10.55	20~200	759,102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3	어단천	지방하천	어단리 산355-3	박월동 504-5	-	6.57	20~120	420,572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3	어단천	지방하천	어단리 산355-3	박월동 504-5	-	6.57	20~120	406,453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7	정동진천	지방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109-1	-	3.30	20~90	155,021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변경	7	정동진천	지방하천	산성우리 297-1	정동진리 568	-	4.64	20~100	216,058	강릉 제2017-237호 (2017.08.23.)	
기정	2	경포천	소하천	초당동 도시지역 경계	강문동 해안	-	1.34	50~88	77,189	강릉 제2015-159호 (2015.06.02.)	
변경	8	경포천	지방하천	대전동 449-2	강문동 297-1	-	7.80	25~225	459,807	강릉 제2015-159호 (2015.06.02.)	
신설	9	신왕천	지방하천	신왕리 611	신왕리 산328-1	-	5.61	25~220	390,652	-	
신설	10	송현천	지방하천	송현리 207-1	고단리 39	-	5.86	5~45	233,398	-	

(계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	김나무골천	소하천	노동리 산339-1	노동리 601-4	-	0.60	6~25	9,596	-	
신설	3	개자리천	소하천	관음리 949-1	금산리 735-1	-	3.61	2~29	42,736	-	
신설	4	건남천	소하천	금진리 44-3	금진리 124-44	-	1.08	6~13	10,046	-	
신설	5	검정이골천	소하천	왕산리 210-1	왕산리 산93	-	1.26	12~27	25,012	-	
신설	6	고단다리 골천	소하천	고단리 607-8	고단리 276	-	4.55	3~35	50,362	-	
신설	7	고단천	소하천	고단리 산400-1	고단리 32-25	-	4.60	8~32	65,272	-	
신설	8	곰자리골천	소하천	대기리 산2-1	대기리 2810-6	-	1.55	10~60	46,195	-	
신설	9	괴일천	소하천	관음리 75	금산리 87-1	-	2.19	5~38	27,857	-	
신설	10	구라미천	소하천	석교리 산151	사천진리 274-7	-	6.95	10~40	188,067	-	
신설	11	단경천	소하천	언별리 산274-3	언별리 산265-1	-	5.02	15~200	249,980	-	
신설	12	닭목천	소하천	대기리 2786	대기리 2810-5	-	4.48	5~72	92,601	-	
신설	13	담산천	소하천	담산동 454-2	학산리 1378-2	-	1.96	5~15	17,942	-	
신설	14	대성천	소하천	학산리 산179-1	학산리 655-3	-	1.84	5~45	26,760	-	
신설	15	덕실상천	소하천	덕실리 362	덕실리 492	-	1.63	3~22	17,865	-	
신설	16	도화목이천	소하천	대기리 404-3	대기리 산415	-	0.88	2~26	7,745	-	
신설	17	돌적골천	소하천	금진리 576-1	금진리 681	-	1.06	2~10	6,015	-	
신설	18	말미천	소하천	여찬리 762	내곡동 380-1	-	2.71	10~30	44,358	-	
신설	19	망덕천	소하천	임곡리 산228	임곡리 655	-	1.05	6~18	10,601	-	

(계속)

도시관리계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0	매비위골천	소하천	신왕리 346-10	신왕리 산54-1	-	0.81	5~15	8,636	-	
신설	21	면소골천	소하천	송림리 716-3	송림리 804-20	-	1.23	2~13	6,704	-	
신설	22	명계천	소하천	산성우리 325-4	산성우리 산157-3	-	1.22	3~45	15,932	-	
신설	23	무나니천	소하천	행정리 산137-1	행정리 240-2	-	1.37	6~22	19,230	-	
신설	24	밤재천	소하천	낙풍리 산1-3	낙풍리 29-1	-	0.75	10~33	15,073	-	
신설	25	백운천	소하천	유등리 447	유등리 509-1	-	0.51	3~10	4,181	-	
신설	26	뱀골천	소하천	장덕리 770	교항리 564-2	-	3.55	4~38	46,498	-	
신설	27	버들천	소하천	유등리 230	유등리 5	-	1.57	4~25	13,795	-	
신설	28	보광천	소하천	보광리 산556-1	보광리 산76-6	-	5.22	10~64	186,482	-	
신설	29	보래미천	소하천	어단리 1040-8	어단리 229-4	-	0.98	7~18	10,880	-	
신설	30	본동천	소하천	퇴곡리 산66	퇴곡리 383-5	-	0.51	5~28	5,442	-	
신설	31	부곡천	소하천	송림리 산21-2	동덕리 1001-2	-	2.23	2~25	26,289	-	
신설	32	부연천	소하천	삼산리 1213-2	삼산리 1453-2	-	1.44	15~117	293,807	-	
신설	33	분수골천	소하천	정동진리 산103-2	정동진리 421-5	-	0.73	2~22	5,032	-	
신설	34	사태골천	소하천	도마리 184-2	도마리 산19	-	0.62	6~14	5,948	-	
신설	35	산대월천	소하천	방동리 626	산대월리 268	-	2.90	2~25	32,704	-	
신설	36	산북천	소하천	산북리 100	산북리 1364	-	3.39	2~35	50,921	-	
신설	37	삼덕천	소하천	어단리 산92-2	어단리 137	-	1.19	4~40	15,820	-	

(계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38	삼왕천	소하천	보광리 695-1	보광리 308-6	-	4.51	5~43	97,586	-	
신설	39	삼당령천	소하천	목계리 172-10	목계리 산460-10	-	1.80	15~75	64,815	-	
신설	40	서북개골천	소하천	장덕리 산154	장덕리 1000-1	-	1.32	10~32	19,594	-	
신설	41	소림천	소하천	금진리 산81	금진리 176-4	-	0.87	3~34	18,513	-	
신설	42	속색천	소하천	삼교리 341	삼교리 83	-	0.90	7~20	9,885	-	
신설	43	송암골천	소하천	덕실리 850	노동리 797	-	1.36	3~21	12,938	-	
신설	44	송암천	소하천	송암리 653	대전동 450	-	3.23	5~20	47,768	-	
신설	45	수무골천	소하천	석교리 647	판교리 911-1	-	3.15	5~30	44,386	-	
신설	46	수채골천	소하천	목계리 산1-1	목계리 578	-	0.66	10~20	9,859	-	
신설	47	수터골천	소하천	삼산리 787	삼산리 770-4	-	0.70	7~15	8,689	-	
신설	48	아랫 닭목이천	소하천	대기리 2797	대기리 1316-1	-	1.37	2~15	9,368	-	
신설	49	안소재천	소하천	송현리 308-1	송현리 333	-	1.70	5~20	16,799	-	
신설	50	안식골천	소하천	사기막리 119	사기막리 462	-	1.36	5~25	15,845	-	
신설	51	양지천	소하천	낙풍리 280-1	현내리 산59	-	0.91	3~10	5,151	-	
신설	52	어벌천	소하천	언별리 982	언별리 1051	-	0.79	5~11	6,197	-	
신설	53	연곡천	소하천	삼산리 1185-1	퇴곡리 606	-	10.40	83~160	521,446	-	
신설	54	연내천	소하천	노동리 산123-2	노동리 400-4	-	2.92	5~20	58,378	-	
신설	55	예림천	소하천	남양리 1857-15	남양리 315	-	1.11	4~13	8,882	-	

(계속)

도시관리계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56	오리골천 (정동진)	소하천	산성우리 산278	산성우리 378-5	-	2.60	6~18	35,230	-	
신설	57	오리골천 (주문진)	소하천	장덕리 산276	장덕리 483	-	1.79	10~15	27,341	-	
신설	58	외계천	소하천	삼산리 산51-1	삼산리 483-3	-	1.04	4~10	8,130	-	
신설	59	용소골천	소하천	구정리 산132	구정리 577-3	-	1.62	12~40	46,058	-	
신설	60	용소천	소하천	송현리 산85-3	송현리 207-1	-	0.95	9~27	21,109	-	
신설	61	용연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193	사기막리 826	-	1.53	7~10	14,585	-	
신설	62	우암천	소하천	향호리 820	주문리 1373-5	-	4.89	15~25	119,082	-	
신설	63	운계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55-1	사기막리 512-4	-	1.55	7~23	21,149	-	
신설	64	윗득목0천	소하천	대기리 산89-1	대기리 1278	-	1.07	6~16	12,486	-	
신설	65	자웃골천	소하천	대기리 2995	대기리 2060-5	-	1.07	10~15	14,305	-	
신설	66	작은 늘막골천	소하천	대기리 607-2	대기리 696	-	1.97	10~15	25,896	-	
신설	67	작은 용수골천	소하천	대기리 243	대기리 156	-	2.13	5~20	24,416	-	
신설	68	재궁골천	소하천	임곡리 868-28	임곡리 364	-	0.74	9~18	10,054	-	
신설	69	쟁골천	소하천	사기막리 산96	사기막리 291-1	-	1.16	6~18	12,265	-	
신설	70	제리니천	소하천	왕산리 587-1	왕산리 40	-	2.29	6~28	41,306	-	
신설	71	제비천	소하천	제비리 433	회산동 177-12	-	5.74	7~20	68,766	-	
신설	72	집필천	소하천	심곡리 1-74	심곡리 157-22	-	0.76	5~10	5,751	-	
신설	73	초막천	소하천	어흘리 424	어흘리 산328	-	1.46	7~55	33,912	-	

(계속)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74	큰늘막골천	소하천	대기리 523	대기리 583	-	1.00	7~15	9,751	-	
신설	75	큰무일천	소하천	보광리 73-1	사기막리 산550	-	3.46	7~33	63,712	-	
신설	76	큰용수골천	소하천	대기리 산1-12	대기리 914-6	-	7.35	5~60	223,760	-	
신설	77	퇴곡천	소하천	퇴곡리 산96	퇴곡리 405-5	-	0.59	3~10	3,672	-	
신설	78	피내천	소하천	산성우리 산90	산성우리 297-1	-	3.47	13~60	104,923	-	
신설	79	하느피천	소하천	고단리 565	고단리 238-2	-	3.79	5~20	53,103	-	
신설	80	한라천	소하천	산계리 338-3	산계리 산501	-	0.56	10~20	7,437	-	
신설	81	향우천	소하천	위촌리 719-1	위촌리 산99	-	1.72	9~18	26,080	-	
신설	82	해명천	소하천	정동진리 555	정동진리 50-1	-	0.77	4~10	5,696	-	
신설	83	향천	소하천	향호리 산303	향호리 산59-29	-	2.51	6~20	57,662	-	
신설	84	향호천	소하천	향호리 969-6	향호리 1509	-	3.02	10~35	92,830	-	
신설	85	혀바위천	소하천	산계리 산100	산계리 358	-	0.52	6~13	4,818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천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L = 10.46\text{km}$ • $A = 964,088\text{m}^2 \rightarrow 1,004,184\text{m}^2$ 증)40,096m^2 	
2	도마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L = 10.55\text{km}$ • $A = 539,905\text{m}^2 \rightarrow 759,102\text{m}^2$ 증)219,197m^2 	
3	어단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L = 6.57\text{km}$ • $A = 420,572\text{m}^2 \rightarrow 406,453\text{m}^2$ 감)14,119m^2 	
7	정동진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L = 4.64\text{km}$ • $A = 155,021\text{m}^2 \rightarrow 216,058\text{m}^2$ 증)61,037m^2 	•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하천을 하천 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8	경포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L = 7.80\text{km}$ • $A = 77,189\text{m}^2 \rightarrow 459,807\text{m}^2$ 증)382,618m^2 	
9	신왕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5.61\text{km}, A = 390,652\text{m}^2$ 	
10	송현천 (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5.86\text{km}, A = 233,398\text{m}^2$ 	
2	감나무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0.60\text{km}, A = 9,596\text{m}^2$ 	
3	개자리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3.61\text{km}, A = 42,736\text{m}^2$ 	
4	건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1.08\text{km}, A = 10,046\text{m}^2$ 	•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
5	검정이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1.26\text{km}, A = 25,012\text{m}^2$ 	
6	고단다리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4.55\text{km}, A = 50,362\text{m}^2$ 	
7	고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L = 4.60\text{km}, A = 65,272\text{m}^2$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곰자리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55\text{km}$, $A = 46,195\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9	괴일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19\text{km}$, $A = 27,857\text{m}^2$ 	
10	구라미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6.95\text{km}$, $A = 188,067\text{m}^2$ 	
11	단경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5.02\text{km}$, $A = 249,980\text{m}^2$ 	
12	닭목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4.48\text{km}$, $A = 92,601\text{m}^2$ 	
13	담산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96\text{km}$, $A = 17,942\text{m}^2$ 	
14	대성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84\text{km}$, $A = 26,760\text{m}^2$ 	
15	덕실상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63\text{km}$, $A = 17,865\text{m}^2$ 	
16	도화목이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88\text{km}$, $A = 7,745\text{m}^2$ 	
17	돌적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6\text{km}$, $A = 6,015\text{m}^2$ 	
18	말미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71\text{km}$, $A = 44,358\text{m}^2$ 	
19	망덕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5\text{km}$, $A = 10,601\text{m}^2$ 	
20	매바위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81\text{km}$, $A = 8,636\text{m}^2$ 	
21	면소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23\text{km}$, $A = 6,704\text{m}^2$ 	
22	명계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22\text{km}$, $A = 15,931\text{m}^2$ 	
23	무나니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37\text{km}$, $A = 19,230\text{m}^2$ 	
24	밤재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5\text{km}$, $A = 15,073\text{m}^2$ 	
25	백운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51\text{km}$, $A = 4,181\text{m}^2$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뱀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55\text{km}$, $A = 46,498\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27	버들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57\text{km}$, $A = 13,795\text{m}^2$ 	
28	보광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5.22\text{km}$, $A = 186,482\text{m}^2$ 	
29	보래미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98\text{km}$, $A = 10,880\text{m}^2$ 	
30	본동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51\text{km}$, $A = 5,442\text{m}^2$ 	
31	부곡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23\text{km}$, $A = 26,289\text{m}^2$ 	
32	부연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44\text{km}$, $A = 293,807\text{m}^2$ 	
33	분수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3\text{km}$, $A = 5,032\text{m}^2$ 	
34	사태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62\text{km}$, $A = 5,948\text{m}^2$ 	
35	산대월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90\text{km}$, $A = 32,704\text{m}^2$ 	
36	산북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39\text{km}$, $A = 50,921\text{m}^2$ 	
37	삼덕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19\text{km}$, $A = 15,820\text{m}^2$ 	
38	삼왕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4.51\text{km}$, $A = 97,586\text{m}^2$ 	
39	삽당령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80\text{km}$, $A = 64,815\text{m}^2$ 	
40	서북개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32\text{km}$, $A = 19,594\text{m}^2$ 	
41	소람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87\text{km}$, $A = 18,513\text{m}^2$ 	
42	속색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90\text{km}$, $A = 9,885\text{m}^2$ 	
43	송암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36\text{km}$, $A = 12,938\text{m}^2$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4	송암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23\text{km}$, $A = 47,768\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45	수무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15\text{km}$, $A = 44,386\text{m}^2$ 	
46	수채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66\text{km}$, $A = 9,859\text{m}^2$ 	
47	수터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0\text{km}$, $A = 8,689\text{m}^2$ 	
48	아랫닭목이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37\text{km}$, $A = 9,368\text{m}^2$ 	
49	안소재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70\text{km}$, $A = 16,799\text{m}^2$ 	
50	안식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36\text{km}$, $A = 15,845\text{m}^2$ 	
51	양지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91\text{km}$, $A = 5,151\text{m}^2$ 	
52	어벌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9\text{km}$, $A = 6,197\text{m}^2$ 	
53	연곡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40\text{km}$, $A = 521,446\text{m}^2$ 	
54	연내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92\text{km}$, $A = 58,378\text{m}^2$ 	
55	예림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11\text{km}$, $A = 8,882\text{m}^2$ 	
56	오리풀천(정동진)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60\text{km}$, $A = 35,230\text{m}^2$ 	
57	오리풀천(주문진)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79\text{km}$, $A = 27,341\text{m}^2$ 	
58	외계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4\text{km}$, $A = 8,130\text{m}^2$ 	
59	용소골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62\text{km}$, $A = 46,058\text{m}^2$ 	
60	용소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95\text{km}$, $A = 21,109\text{m}^2$ 	
61	용연천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53\text{km}$, $A = 14,585\text{m}^2$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2	우암천 (소하천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4.89\text{km}$, $A = 119,082\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63	운계천 (소하천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55\text{km}$, $A = 21,149\text{m}^2$ 	
64	윗닭목이천 (소하천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7\text{km}$, $A = 12,486\text{m}^2$ 	
65	자웃골천 (소하천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7\text{km}$, $A = 14,305\text{m}^2$ 	
66	작은늘막골천 (소하천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97\text{km}$, $A = 25,896\text{m}^2$ 	
67	작은용수골천 (소하천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13\text{km}$, $A = 24,416\text{m}^2$ 	
68	재궁골천 (소하천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4\text{km}$, $A = 10,054\text{m}^2$ 	
69	쟁골천 (소하천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16\text{km}$, $A = 12,265\text{m}^2$ 	
70	제리니천 (소하천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29\text{km}$, $A = 41,306\text{m}^2$ 	
71	제비천 (소하천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5.74\text{km}$, $A = 68,766\text{m}^2$ 	
72	집필천 (소하천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6\text{km}$, $A = 5,751\text{m}^2$ 	
73	초막천 (소하천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46\text{km}$, $A = 33,912\text{m}^2$ 	
74	큰늘막골천 (소하천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00\text{km}$, $A = 9,751\text{m}^2$ 	
75	큰무일천 (소하천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46\text{km}$, $A = 63,712\text{m}^2$ 	
76	큰용수골천 (소하천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7.35\text{km}$, $A = 223,760\text{m}^2$ 	
77	퇴곡천 (소하천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59\text{km}$, $A = 3,672\text{m}^2$ 	
78	피내천 (소하천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47\text{km}$, $A = 104,923\text{m}^2$ 	
79	하느피천 (소하천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79\text{km}$, $A = 53,103\text{m}^2$ 	

(계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0	한라천 (소하천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56\text{km}$, $A = 7,437\text{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현황 소하천을 소하천구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81	향우천 (소하천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1.72\text{km}$, $A = 26,080\text{m}^2$ 	
82	해명천 (소하천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77\text{km}$, $A = 5,696\text{m}^2$ 	
83	향천 (소하천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2.51\text{km}$, $A = 57,662\text{m}^2$ 	
84	향호천 (소하천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3.02\text{km}$, $A = 92,830\text{m}^2$ 	
85	혀바위천 (소하천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L = 0.52\text{km}$, $A = 4,818\text{m}^2$ 	

【 방재시설 결정(변경) 총괄도 】

- 지방하천 : 사천천 외 6개소
- 소하천 : 모솔천 외 84개소

